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에 교류협력실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폐지하는 내용으로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9.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직급이 상향되었던 정원 1명(5급 또는 연구관)을 종전의 직급(6급)으로 환원하고, 통일부 사회문화교류정책과의 명칭을 사회문화교류과로 변경하면서 분장사무를 조정하며, 통일부에 평가대상 조직으로 설치한 1개 실과 1개 정책관 및 1개과의 평가기간을 2022년 9월 30일까지에서 각각 2024년 9월 3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9. 00. ~ 9.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4항 중 “사회문화교류정책과·사회문화교류운영과”를 “사회문화교류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회문화교류정책과장”을 “사회문화교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여성”을 “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으로, “사회”를 각각 “사회문화”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사회”를 각각 “사회문화”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4항제3호 중 “강사초빙”을 “강사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보관”을 “관리”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2호 중 “강사초빙”을 “강사진 운영”으로 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보관”을 “관리”로 한다.

별표 1 중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76”을 “75”로 하고, 행정주사 “30”을 “31”로 한다.

별표 1의2 중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80”을 “79”로 하고, 행정주사 “26”을 “27”로 한다.

별표 9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9]

통일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24조 관련)

조직	정원	평가기간
1) 교류협력실	0명	2024년 9월 30일까지
2) 교류협력실 교류협력정책관	0명	2024년 9월 30일까지
3) 교류협력실 남북접경협력과	0명	2024년 9월 30일까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 ③ (생 략)	제6조의2(교류협력실)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교류협력실에 교류총괄과 · 남북경협과 · <u>사회문화교류정책과</u> · <u>사회문화교류운영과</u> · 남북접경협력과 · 개발지원협력과 및 교류지원과를 두되, 각 과장은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 ----- <u>사회문화교류과</u> ----- ----- ----- ----- ----- -----.
⑤ · ⑥ (생 략)	⑤ · ⑥ (현행과 같음)
⑦ <u>사회문화교류정책과</u> 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⑦ <u>사회문화교류과</u> 장----- -----.
1. 남북한 간 교육, 학술, 언론, 방송, 노동, 출판, 종교, 청소년, <u>여성</u> 분야 등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 · 추진	1. ----- ----- --- <u>여성,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u> ----- <u>사회문화</u> ----- ----- <u>사회문화</u> ----- -----
2.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 · 시행	2. <u>사회문화</u> ----- -----
3.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3. <u>사회문화</u> ----- ----- -----
4.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4. <u>사회문화</u> -----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
5.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u>사회문화</u> ----- ----- ----- -----
6.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6. <u>사회문화</u> ----- -----
7.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7. <u>사회문화</u> ----- ----- ----- -----
8.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8. <u>사회문화</u> ----- ----- -----
9.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책의 수립	9. <u>사회문화</u> ----- ----- -----
10.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0. <u>사회문화</u> ----- ----- -----
11.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1. <u>사회문화</u> ----- -----
12.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으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12. <u>사회문화</u> ----- -----
13. <u>사회</u>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종합 및 통계 유	13. <u>사회문화</u> ----- -----

지

--

⑧ 사회문화교류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1. 남북한 간 예술, 체육, 역사, 언어, 저작권 분야 등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하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이라 한다)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추진

2.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현안에 대한 대책의 수립·시행

3.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법령 및 제도의 입안 또는 기획

4.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5.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주민의 접촉·왕래에 대한 기획·조정·승인 및 지원

6.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 물자의 대북 반출·반입 승인

7.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협력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도·감독·행정조사 및 조정명령

8.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 지침
및 기준 마련에 관한 사항

9.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 간 실무회담 대
책의 수립

10.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법인·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11.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12.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으
로 인한 북한방문자 사후관리

13. 문화 관련 분야 교류협력의
동향 분석·종합 및 통계 유
지

⑨ ~ ⑪ (생략)

제19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무소) ① ~ ③ (생략)

④ 교육훈련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략)

3. 교육훈련에 따른 강사초빙

4. ~ 6. (생략)

7. 보호대상자의 휴대품 보관

⑤ 삭제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19조(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
무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2. (현행과 같음)

3. ----- 강사진 운영

4. ~ 6. (현행과 같음)

7. ----- 관리

⑥ (생 략)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③ (생 략) ④ 교육운영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1. (생 략) 12. 보호대상자의 교육훈련을 위한 <u>강사초빙</u> 13. ~ 15. (생 략) 16. 보호대상자의 휴대폰 <u>보관</u> ⑤ 삭 제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무소 화천분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11. (현행과 같음) 12. ----- -- <u>강사진 운영</u> 13. ~ 15. (현행과 같음) 16. ----- <u>관리</u> ⑥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76</u>	<u>75</u>	-1		
		•		•	•		
		•		•	•		
행정주사			<u>30</u>	<u>31</u>	+1		
		•		•	•		
		•		•	•		

[별표 1의2]

통일부 공무원정원표(제21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		.		.		
행정사무관		또는 기록연구관	<u>80</u>		<u>79</u>	-1	
	.		.		.		
	.		.		.		
행정주사			<u>26</u>		<u>27</u>	+1	
	.		.		.		
	.		.		.		